

[일련번호 : 70]

양 천 구

시 정 요 구

제 목 재난안전대책본부 당직 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중복 산정 등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○○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○○과는 ‘풍수해분야 안전관리계획’, 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당직근무 운영 및 수당지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해당 연도별 ‘풍수해분야 안전관리계획’에 따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유지를 위한 평시·보강근무자에게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규칙」,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」에 준하여 일·숙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.

「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(행정안전부 예규)」에 의하면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의 금전적 보상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당직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중복지급이 불가하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가.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근무자 근무기록 관리 미흡

○○과는 2024년 여름철 태풍·호우대비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·운영 계획(○○과-5841, 2024. 4. 17.) 및 2024년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명령(○○과-6977, 2024. 5. 7.)에 따라 평시 근무조는 근무명령을 통해 구성·운영하고, 보강근무 시에는 단계별 근무조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상황근무자에게 일·숙직비를 지급하고 있다. 상황근무자에 대한 일·숙직비 지급 시에는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음과 같이 근무기록이 미흡한 사실이 확인되었다.

- ① 상황실 평시근무자의 경우 근무명령은 확인되나 근무기록이 미비하여 온나라 시스템 결재문서 상 수방근무일지에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응소자 서명부 등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.
- ② 상황실 보강근무자의 경우 근무명령, 응소대장, 서명부 등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었으며, 온나라 시스템 결재문서 상 수방근무일지에도 근무인원만 기재되어 있어 근무자 명단 작성 등이 누락되어 있으며, 반면 신월빛물저류배수시설 일일 근무일지 및 각 빗물펌프장별 근무일지에는 근무자와 근무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무내역 확인이 가능하였다.

나. 재난안전대책본부 당직근무 시 초과근무시간 중복 산정

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근무자 일·숙직비 지급대상자의 지급일자의 초과 근무 기록, 초과근무 정산내역을 확인한 결과, ○○○과는 2024년 3건의 보강근무 시간과 초과근무 정산시간이 중복 산정된 사실이 확인되었다.

아래 표와 같이 3건 중 2건은 당직근무 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액이 발생하였고, 1건 부당수령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보강근무 발령시간과 초과근무 정산시간이 중복 산정되는 등 초과근무 관리·정산 과정이 미흡하게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. 금번 사례에서는 월 인정된 초과근무 시간이 상한 시간을 초과하여 환수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정산방식이 상한에 미도달한 월에 적용될 경우 중복지급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, 보강근무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[표] 풍수해 비상근무자 당직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중복산정 내역

| 연번 | 직급 | 성명 | 숙박지급 대상일자 | 근무형태 | 초과근무 내역 | 중복 정산시간 | 근무일지 | 부정수령액 |
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-------|
| 1 | | | 2024.6.29.(토) 이간 | 보강 17:00~익일 06:00 | 2024.6.29. 17:00~18:00 | 60분 | 신월빛물저류배수시설 당일 근무일지 없음. 응소서명부에 이름있음(대리서명) | 0원 |
| 2 | | | 2024.8.5.(월) | 보강 18:00~익일 09:00 | 2024.8.5. 09:00~23:52 | 240분 | 상황실 | 46,410원 |
| 3 | | | 2024.8.5.(월) | 보강 18:00~익일 09:00 | 2024.8.5. 08:50~23:55 | 240분 | 신월빛물저류배수시설 | 41,670원 |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○○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○○과장은

당직수당과 중복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88,08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,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고, 당직 근무와 초과근무수당이 중복지급되지 않도록 복무관리 및 수당시간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